

Policy and Law Report _Vol.15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0.11~ 10.16) -

October 17,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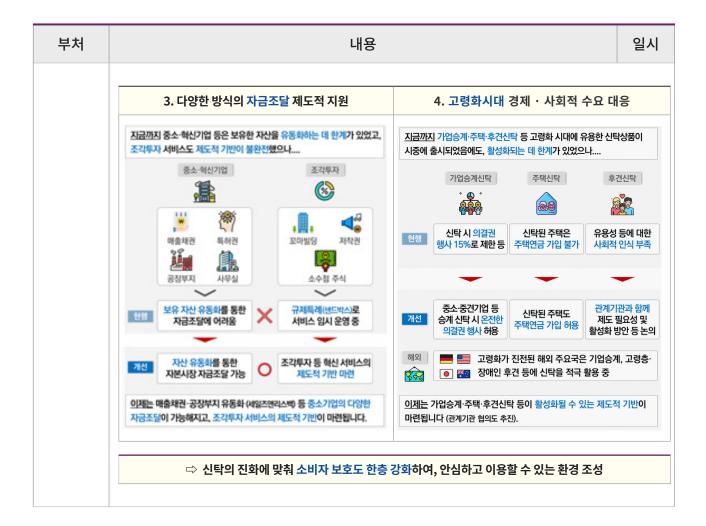
-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 <u>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추진</u>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22.9.7.~23.)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 교통부	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 개선 -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 감리자 지정권자(지자체)는 이의제기 발생시 책임문제 등의 우려로 기한없이 감리자를 지정 (확정)하지 않아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감리자 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 적격심사시, 감리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예정공정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00세대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기준 완화 	2022- 10-10
	* 현재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경력이 4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4년이 도과 되면 경력 단절이 불가피하여 우수감리원 육성에 한계	
	 조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등 마련 재개발사업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 마련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지역별로 상이하거나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함 	
	③ 건축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의 이격거리*를 '정북(正北)방향'과 '정남(正南)방향' 중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인접 건축물의 일조·통풍 등 적정 주거환경확보를 위해 이격거리를 설정	

부처	내용	일시
	 현재,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남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를 전문가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확대한다. (1)건축사, 2)건축구조기술사 → 1)건축사, 2)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물 유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재 78개 시·군·구에 설치·운영 중 ** 건축사 18,335명, 건축구조기술사 1,220명, 건축시공기술사 10,273명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요건)을 완화	
	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중고자동차 거래시 등록관청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정기검 사 받을 것을 안내하여, 중고차 취득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 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면제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 변경 예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저축은행 영업 양도·양수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 정하여 행정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 위원회	①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 구체화 (안 제15조제1항제2호) - 영업양도의 불가피성,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을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기준으로 규정	2022- 10-07
	② 영업 전부의 양수 심사 기준 구체화 (안 제15조제1항제3호) - 영업 전부의 양수의 경우 합병의 인가심사기준 준용	
	③ 합병·전환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심사기준 명확화 ([별표4]) - 추가출자시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이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이내일 것으로 명확화	

부처	내용		일시
	• <u>「신탁업 혁신 방안」발표</u> 금융위원회는 고령화·국민재산축적 등에 따라 가져 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업 등의 적극적 재산활용· 탁업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하기로 함	•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전은 물론 주식·주택 등 가계가 보유한 다양 무 등 비금융 서비스도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을 합 서비스 플랫폼 기능 강화 ②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제도화하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신탁의 종	2022- 10-13
	화, 공장부지 유동화(세일즈앤리스백) 등으로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 형성 ③ 고령화시대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가업승계신택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④ 신탁업 활성화에 걸맞는 수준의 두터운 소비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등의 활성화를 위	
	※ 신탁업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1. 다양한 재산을 종합 · 장기적 관리 지금까지 신탁은 신탁업자가 미리 정한 주식·파생결합증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고객이 금전을 맡기는 정형화된 1회성 상품이었으나 전행 고객 ① 금전 신탁 ② 파생결합증권 ○ 파생결합증권 ○ 투자 기선 ② 다양한 재산 종합 신탁 ② 위탁받은 다양한 재산의 중합적·장기적 으로 관리·운용	## 고객 ① 노후종합신탁 신탁사	1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10.13. 시행. 다만,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서 퇴직한 후 개업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의 수임을 제한하고,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공포, 2022. 11. 24. 시행)됨 이에 따라,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및 그 처리사무의 범위와 변호사 대상 실무교육의 과목・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 재정부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합리화 (제2조 및 제8조) - 공무원 경력으로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의 합격 여부가 일반 응시자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결정할 때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합격자는 제외하도록 함 - 세무사 자격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일반 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면 그 최종 순위 합격자의 평균점수에 제2차 시험 과목의 난이도를 반영한 계수를 곱한 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하여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	2022- 10-13
	 ② 세무대리의 수임제한 대상 구체화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임할 수 없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퇴직 1 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파견·교육훈련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에서 제외함 -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임할 수 없는 국가기관 처리사무의 범위를 조세 관련 법률에 따른 처분이나 그 처분의 불복에 관한 사무 또는 조세 관련 법령에 관한 해석 사무,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한 질문·검사·조사 사무 등으로 정하되,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나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등에 대해서는 수임할 수 있도록 함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③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통보 및 공개 절차 (제14조의1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세무법인의 명칭·주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내용·사유 등을 해당 세무법인이나 한국세무사회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한국세무사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취소는 3년간, 업무정지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동안 게재하도록 함 	
	 ④ 변호사 대상 실무교육의 과목 및 방법 (제33조의6 신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의 과목을 세법, 회계, 세무조정 등으로 하고, 실무교육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 1회 이상실시하도록 하며, 실무교육의 시기와 장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소관부처 과학 기술전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등이 발생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71호, 2022.6.10. 공포)됨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지의 근거가 되는 약관사항 및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③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안 제54조의2 삭제및 안 제55조의6 신설, 안 별표 4의2) -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을 별표 4의2에서 규정함 (안 제55조의6제1항신설 및 안 별표 4의2) - 정보보호 취약점의 신고 접수, 포상금의 결정, 지급 및 지급 취소 등 포상금 관련 제반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함 (안 제55조의6제2항 신설) ② 조사의 방법・절차 및 자료의 보호 (안 제60조, 안 별표 5) -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개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증표를 내보여야 함 (안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안 별표 5) - 침해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획득한 자료는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원인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함 (안 제60조제3항 신설) ③ 속이는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약관 사항(안 제60조의 10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등 조치의 사유 및 내용, 이용정지기간,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및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절차를 이용약관에서 정하도록 함	예고일자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제공중지요청기관에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공중지요청기관은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해당 조치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⑤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안 별표 9 제2호머목) - 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함	
	※ 의견 제시기간 : $10/13(목)\sim11/22(화)$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u>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신산업제도과)</u> 로 제출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클라우드컴퓨팅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2. 1. 11, 시행 2023. 1. 12.)됨	
	이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보안인증의 방법·절차 등 신설 (안 제15조의2) - 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함	
	②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신설 (안 제15조의3) - 보안인증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등을 규정함	2022- 10-14
	③ 보안인증의 인증표시 및 홍보 신설 (안 제15조의4) - 보안인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인증 표시 및 홍보 근거를 마련함	
	④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신설 (안 제15조의5) - 평가기관이 보안인증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사후평가하기 위한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함	
	⑤ 보안인증의 수수료 신설 (안 제15조의6) - 평가기관의 보안인증 신청인 대상 수수료 부과 근거 및 산정 기준,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지원 등을 규정함	
	⑥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 등 신설 (안 제15조의7) -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유효기간,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⑦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신설 (안 제15조의8)	
	 ⑧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 업무 위탁 규정 신설 (안 제20조제3항제5호) -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업무 중 고시로 정한 업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 근거를 마련함 	
	※ 의견 제시기간 : $10/14$ (금) \sim 11/23(수)까지 <u>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u> 또는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u> 로 제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외무역법 개정('22.6.10)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원산지 표시 검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함 (안 제57조의2)	
산업통상	②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안 제59조의2)하고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을 고려하기 위한 요건 보완 (안 제60조제2항)	2022-
자원부	③ 수출물품 외에 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의 표현 정비 (안 제66조 및 제90조)	10-13
	④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권한을 관세청장에 위탁하도록 함 (안 제91조제4항 및 제6항)	
	※ 의견 제시기간 : 10/13(목)~11/22(화)까지 <u>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u> 또는 <u>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u> 로 제출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률 명칭 현행화 및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청자 부담 완화 ('22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 주요 내용으로는 ① 타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현행화 (안 제2조2제1항제3호 개정)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 명칭을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②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서류제출 부담 경감 (안 제3조제1항제3호 삭제) - 현재는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법인허 가설립증 등을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 이러한 제출 서류 중 법인설립허가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서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의견 제시기간 :10/11(화)∼11/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로 제출	2022- 10-11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 가능한 회사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개인투자조합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는 경우 갖춰야 하는 자격기준을 새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 회사 확대와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 완화 및 요건 강화(안 제6조) -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	2022- 10-12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해야 하는 출자금 비율을 종전에는 출자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에서 3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전문개인투자자를 제외한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5년 이상 자산을 운용한 경력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② 개인투자조합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발행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등에서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미적용 요건 (안 제9조)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행위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해당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행위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 의견 제시기간 $:10/12(수)\sim11/3(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투자회수관리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물적 분할은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사(分社)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되 이를 분할회 사의 100% 자(子)회사로 만드는 형태의 분할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상장회사의 분할 공시와 기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물적 분할은 전체 상장회사 분할의 78%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5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음	
법제사법 위원회	그런데 신설된 자회사가 상장되면서 기존 모(母)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고, 주가 하락의 손실을 모(母)회사의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일이 반복되 면서 물적 분할이 사회문제로 떠오름	2022- 10-11
	한편, 현행법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이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소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물적 분할의 경우에도 기존 회사의 주주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모(母)회사의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으로 써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증권시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530조의1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동업자에게 과세하는 제도임	
기획재정 위원회	즉,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과세하지 않고 운영자 및 투자자에 대해서만 소득세 내지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는데,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투자자는 수동적 동업자로 분류되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2022- 10-12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20%의 세율(조세 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더 낮은 경우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되고 있음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런데 외국인투자자가 해외펀드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바, 해외펀드를 통한 투자가 세제상 유리해 국내펀드가 역차별 받는 상황이며 이는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는 또한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펀드에 대해 비과세하면서 각 투자자에게는 소득원천별로 과세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원천 별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해외펀드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내펀 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구조개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 100조의18제3항)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공유서비스 이용 종료 후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 횡단보도, 보도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상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행정안전 위원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횡단보도, 보도 등 공중이 통행하는 공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이를 불법 주정차로 간주하여 강제로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이나 공유서비스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노력 중임	2022- 10-11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상이하고,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견인료 청구 근거를 법령이 아닌 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 어 일선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및 그 밖의 공공 장소에 무단방치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이를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기업 등에 청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무 단방치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안 제36조의2 신설)	

소관위	법률안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 영의원 등 22인)」 회소금속은 미래차, 반도체 등 산업고도화에 필수적인 핵심소재로 신산업 성장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희소금속은 중국, 호주,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국가에 매장・생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같은 자원보유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수출제한조치등으로 인해 공급 및 가격 불안, 그리고 무역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임이에 세계 각국은 희소금속을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과도한 수입의존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자국내 산업기반 확보를 위해 대책을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2011년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통해 수급안정화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투자활성화,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산업육성 기반 구축 성과를 얻었으나, 타 국가에 비해 희소금속 산업 육성・육성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이에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재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해 우리나라 희소금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2022- 10-1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게 그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며, 부정한 방법·목적이 개입된 기술 유출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기술 정 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극히 제한적이며 공개를 위한 절차 역시 '관 계자 의견 청취', '관계 장관의 동의', '위원회 심의' 등을 모두 요구하고 있어 실효적이지 못 함. 이에 이 같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조항이 악용돼 공익적 문제제기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됨 따라서 국민의 생명·신체·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 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 공익을 위 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공개하기 위한 절차 역시 현실 화해야 함	2022- 10-1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보 비공개 범위를 '국가핵심기술의 운영에 관한 주요 정보로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비공개 규정의 단서 조항으로 1. 국가의 안전보 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정보, 2.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3.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4. 그 밖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명시함 (안 제9조의2제1항)	
	② 정보 비공개 단서 조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 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함 (안 제9조의2제2항)	
	③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경로'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함 (안 제 14조제8호)	
	④ 또한 비밀유지 의무의 경우를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로 규정하고,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함 (안 제34조제10호)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의 원 등 10인)」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의 활성화를 통해 보건의료 철의 삼각(Iron Triangle for Healthcare)을 극복하고 미래 첨단의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보건복지 위원회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 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 는 추세임	2022- 10-07
	또한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을 넘을 것을 예상되는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안전 달성, 의료서비스 질 제고, 국민 건강관리 등을 위해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체계를 효율화하고 급격한 의료비 지출 증가를 완화해야 함	
	한편 우리나라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의 보급률은 90%가 넘고 전국민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이를 우리나라의 뛰어난 ICT 역량과 결합한다면	

소관위	관위 법률안	
	보건의료서비스의 혁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의약품 등 디지털 ·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 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 혁신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바 있으며, 기존 보건의료 관계 법률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및 보건의료데이터 공유ㆍ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개인 맞춤형 의료 개념인 정밀의료를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전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함.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공유·활용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이를 통해 미래 첨단의료 발전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환자 안전 달성,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 등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제2의 반도체 산업'이라 불리는 디지털 · 바이오헬스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정보로써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는 등 보건의료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등 보건의료 분야 유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2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③ 연구적 목적 등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침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던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범위·방법·절차 등을 법률 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를 활 성화하고자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소관위	법률안	
	④ 국민이 의료·건강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신에 대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자기 주도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고, 개인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⑤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 (안제9조,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⑥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연구개발 촉진, 인력 양성,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u>「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u> 의원 등 11인)」	
	환경부는 인센스 스틱, 아로마 캔들 등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인 연소성 방향제 · 탈취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 고시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은 제품을 연소시키면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상 안전기 준은 제품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제품의 연소 시에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은 부재함	2022- 10-12
환경노동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시 벤젠 등의 유해 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위원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질과 발생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선을 정하도록 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안 제9조제2항제3호·제4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1회용 컵의 재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됨	2022- 10-12
	국민 대부분이 하루에 한 번은 사용하게 되는 1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은 국민 개인의 노력에 맡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 특히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노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음	

소관위	법률안	
	현행법은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제품의 판매 가격과는 별 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이 자원순환보증금이 컵의 회수율 과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나, 현실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함. 실제 1회용 컵의 사용량이 많은 매장 중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비중이 높음.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본사가 판매하는 1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음	
	이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구입과 처리 비용이 싼 환경부장관 지정 표준용 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가맹거래 관행 상 한계가 있음. 더욱이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의 주체가 본사인지 가맹사업자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부담이 모 두 가맹사업자에게 떠넘겨질 우려도 존재함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에 대하여는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사업자 포함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판매한 1회용 컵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를 사업자"로 간주되도록 하여 프랜차이즈의 1회용 컵 사용 억제 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 하고 가맹점 본사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 의2제1항제2호)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Mobility)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그간 획일적 노선·시간 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성의 극대화가 강조 되고 있음	
국토교통 위원회	특히, 자율차, UAM 등 미래 서비스 등장과 더불어 기존 산업이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화, 플랫폼화 되면서 기존 교통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빌리티 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2022- 10-13
	하지만, 이러한 환경과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은 새로운 업종 및 수단, 서비스를 수용하고 육성 · 지원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웠으며, 그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모빌리티 정책은 민간의 발빠른 혁신속도에 대응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부족했음	
	이에,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ㆍ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며,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모빌리티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되,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조사 수행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 조사대상 우선순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 모빌리티 조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시범사업 등 각종 모 빌리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 도록 함 (안 제8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등 추진 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 인프라 대책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선 권고 또는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함 (안 제9조)	
	⑤ 자동차 중심의 도로 시설 및 교통운영에서 벗어나, 모든 모빌리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친화적 설계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도록 함 (안 제 10조)	
	⑥ 모빌리티 활성화 및 모빌리티 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등을 시험·검증할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등의 근 거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정함 (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등)	
	8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수단·서비스 및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실제 교통에 접목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며, 참여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 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6조)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보유한 데이터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 함 (안 제17조)	



소관위	법률안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및 모빌리티 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함 (안 제18조)	
	① 기존 교통 인프라, 공간구조 등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에 대비한 기존 도시·건축 등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함 (안 제19조)	
	②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등의 심의·의결, 관련 법령 및 규제 개선 권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20조 및 제21조)	
	③ 모빌리티 사업자 등이 모빌리티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모빌리티 관련 정보 수 집·분석, 정책제언 및 제도개선 건의, 교육훈련 등을 수행토록 함 (안 제22조)	
	(4)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제23조 및 제24조 등)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정감사 (계속)	10/4(화) ~ 10/24(월)	<u>국정감사 종합일정표 (10/7 기준)</u>	
	10/18(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206호 발간 - 흡연율 감소를 위한 주요국 입법동향	
국회도서관	10/18(화)	국회도서관 웹진 제54호 발간 - 도서관, 거리와 공간을 넘어서	대구경북
	10/21(금)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102호 발간 -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등	
예산정책처	10/20(목)	「NABO 경제 동향」 10월호 발간	
입법조사처	10/20(목) 14:30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토론회」 개최 - 개도국 핵심인재를 위한 광역비자 도입 방안. K-지방소멸 지수 개발과 지역 대응	대구경북 연구원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56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10/13(목)	<u>「현안, 외국에선?」제45호 발간</u> - 일본의 수해대책으로서의 해저드맵(재해예측지도) 의무화	
입법조사처	10/14(금)	「이슈와 분석」발간 -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인권 현황과 개선방안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 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최유리 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